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동의안은 2010년 3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인 차량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바, 대상 차량이 대부분 단종된 차종이며, 서민의 생계형 차량임을 감안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세율을 종전의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도시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제외)기업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감면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 1. 1)

3. 주요내용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제11조의3)
 - 대 상 : '05.12.31이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 내 용 : 등록세는 종전대로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는 부과하지 않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시설세 면제 (신설, 제13조제4항)
 - 타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임대주택 보급 지원을 위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해 공동시설세 면제
- 기업도시내 감면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안 제30조의2제항)
 - 기업도시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15년간 면제
 - ※ (종전) 기업도시내 입주기업 ⇒ (개정) 기업도시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기존 사업장 이전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개정내용 반영

4. 검토의견

가. 도세감면 조례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

행정안전부에서는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기초로 지방세법 제9조⁹⁾에 근거한 시도

9) 지방세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

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

▶ 도세감면조례 개정 추진과정

-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도 통보(2009. 12월)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도세 감면대상을 검토·확정하여 금번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개정내용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지속 적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¹⁰⁾」에서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화물적재 바닥면적 2m²이상으로 규정하여, 바닥면적 2m²미만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승용자동차¹¹⁾와 같이 과세되나,
- 지방세법 부칙 제9조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동차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 단종된 차량이고 서민의 생계형 차량으로 서민들에게 계속적인 과세 특례의 수혜를 주어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1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 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

11) 자동차 과세 세목은 승용자동차는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 화물자동차는 취득세·등록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임대주택 공공시설세 면제

- 도세감면 조례 개정시행(2010. 1. 1)에 따라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실효성이 미미하고 감면실적이 없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그러나,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과 임대주택 보급 지원을 위해 60㎡이하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을 하는 것임.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라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 현행 기업도시내 입주기업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15년간 면제 하였으나
- 기업도시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기존 사업장 이전은 제외시킴

라. 종합의견

금번 개정안은 도세 감면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시키는 한편, 도세 감면과 관련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화물적재 바닥면적 2㎡미만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종전대로 적용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임대사업자들간 과세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임대주택용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붙임 : 충청북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